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18드단208693 이혼 등
원 고 갑
피 고 을
변 론 종 결 2019. 12. 10.
판 결 선 고 2020. 1. 21.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8. 7. 20.부터 2020.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로부터 재산분할로 1억 2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원고로부터 85,759,48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5. 4.경 결혼식을 올리고 1995. 5. 18.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로 현재 각 성년인 딸과 아들을 두고 있다.

나. ○○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1993년경 △△에 근무하며 업무상 친분이 있던 피고를 만나 호감을 갖고 교제를 하던 중 위와 같이 혼인에 이르게 되었다.

다. 피고는 가사일과 자녀양육은 여자인 원고의 몫이라 여기며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원고에게 이를 미룬 채 늦은 시간까지 자신의 직장생활과 취미활동에 적극적이었고, 간간히 사건본인들을 보면 일방적으로 정한 자신의 뜻과 기준을 강요하며 사건본인들의 생활습관이나 학습태도와 학업성적 등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자녀들의 의사나 감정을 헤아려보려는 노력 없이 과도할 정도로 훈계와 체벌을 하고 심한 경우 훈육을 빙자한 폭행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라. 피고는 그 과정에 원고가 개입할 경우 '입 다물고 있어, 이 여자가 왜 이라노?, 이 여자가 미쳤나?'는 등 원고를 무시하고 위협하듯 언성을 높이고 욕박질러 원고의 말문을 닫게 하였고, 맞벌이인 원, 피고를 대신하여 주중에 자녀들을 돌보시는 원고 어머니에게도 나서지 말라며 나무라듯 이야기를 해 어머니가 눈물을 보인 적이 종종 있었다.

마. 평소 내성적인 성격의 원고는 이런 피고의 태도에 점점 주눅이 들어 피고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막아서기 보다는 집안의 분란을 일으키지 않을 생각으로 피고의 눈치를 살피고 가급적 자신의 속내를 보이지 않은 채 피고가 원하는 정도의 일상적인 대화만 하며 중요한 대화를 회피하는 식으로 지내왔는데, 원고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피고가 자신을 동등한 배우자로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피고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

바. 원고는 중, 고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들이 사춘기까지 겪으며 피고와 갈등이 더욱 심해질뿐더러 학교에서 실시한 행동정서발달검사 등에서 자녀들의 우울과 자살지수가 높아 상담을 권유받고 피고와 상의하였는데, 자녀들을 불러 세워 '학교에서 이렇다는데 왜 그래, 내가 그래서 안 된다. 내가 그러니까 문제다'라며 다그치고 같이 상담을 받아 보자는 조언을 정신병자 취급한다며 으박지르는 피고의 태도에 크게 실망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업을 하는 동생의 투자권유를 받고 2018. 3.경 원고에게 여유자금이 있는지 물었다가 원고가 없다고 하자 원고의 급여까지 정리하여 피고에게 넘길 것을 요구하였다.

아.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이제껏 애써 참고 노력해 온 원고의 노력을 무시하고 우습게 본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녀들과 함께 친정집으로 갔다.

자. 원고는 피고가 제사를 앞두고도 연락을 취하지 않는데다 집 비밀번호까지 변경하자 이혼을 결심한 후 2018. 7. 5. 피고를 상대로 이 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8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판단

1)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사유로 이유 있음

2) 위자료 청구 : 일부 1,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음

나. 판단근거

1) 혼인관계의 파탄 : 앞서 인정한 부부의 혼인관계와 갈등경위, 별거기간, 원고의 이혼의사는 확고해 보이는 점,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바뀌어야 할 사람은 원고라는 입장이어서 부부의 혼인관계가 어긋난 본질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관계회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원에서 가사조사와 변론기일 등을 여러 절차를 거쳤음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입장 차만 확인하였을 뿐 어떠한 합의점도 찾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2)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원고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대화와 설득, 이해를 통한 자연스러운 소통을 이뤄내지 못한 채 가장으로 군림하며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지시, 강요하며 사소한 의견충돌에도 폭언 등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가 이 문제 개입할 경우 원고를 욕박질러 원고의 말문을 닫게 하였고, 이에 원고는 어느 시점부터 피고의 눈치를 살피고 피고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생활해 부부 간의 진정한 대화가 부재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자신만 참고 희생한다고 생각해 불만이 커졌다. 물론 원고도 부부의 혼인관계에서 발생한 여러 갈등상황을 피고와 충분한 대화와 설득 등을 통해 해결해보려는 충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스스로 피고와 대화를 거부하거나 단절한 채 갑자기 집을 나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른 잘못이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피고가 혼인생활 내내 가부장적인 태도로

일방적인 지시와 훈계, 강요로 가족들을 통제하고 통솔하려고 함으로써 원고와 가족들과의 소통을 단절시킨 점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인다. 피고는 이제껏 가장으로 성실히 직장을 다니며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혼인기간 중 원고와 자녀들에게 보인 폭력적인 언행들은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리화하고 있지만, 일방적인 소통방식만 고수해 온 피고의 행동들이 원고를 비롯한 가족들과 관계를 소원하게 하고 그 결과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가정경제권을 넘기라고 요구하고 원고가 집을 나가자 집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원고와 갈등을 더욱 증폭시켰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07. 5.경 부정행위를 하여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과 절망감을 주었음에도 원고를 용서하고 이를 감내하며 살아왔고, 다소간 엄하게 자녀들을 대한 것은 있으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2018. 3.경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며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살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7. 5.경 부정행위를 한 사실 등 원고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일부 잘못이 있다고 있더라도 그 자체로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위자료 액수 : 위와 같은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그밖에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과 별거기간, 원고와 피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1,500

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7.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별거 내지 파탄 후 재판 시까지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 120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도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8. 7. 4.경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그 후 부부공동생활의 용도로 인하여 변동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당사자의 명확한 입증이 없는 한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다만, 원고와 피고가 일치하여 그 가액을 진술하거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등으로 나타난 가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 1)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은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은 별지 분할대상재산명세표 '당사자 주장 등 참조'란 기재와 같다.

다.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50%, 피고 50%

[판단근거]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취득경위 및 이용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피고가 혼인기간 중 직장생활을 하며 번 수입이 가정경제의 주된 재원이 된 점, 원고도 혼인기간 동안 직장생활과 가사를 병행하며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점 등), 소득재산의 발생 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과 소득,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등을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 분할대상 재산의 정의와 형태, 취득 경위, 담보대출 명의자와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외 각자 명의의 재산은 그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그 결과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한다.

3)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액

[계산식]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

105,075,969원(원, 피고의 순재산 합계 210,151,938원 $\times$ 0.5)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피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 213,424,321원(피고의 몫 105,075,969원 - 피고의 순재산 318,500,290)

③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이전함에 따른 정산금

101,575,679원(이 사건 아파트 3억 1,500만 원 - 피고 초과 보유금 213,424,321원)

④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③항의 금액에 조금 상회하는 1억 200만 원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재산분할로 1억 2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미정